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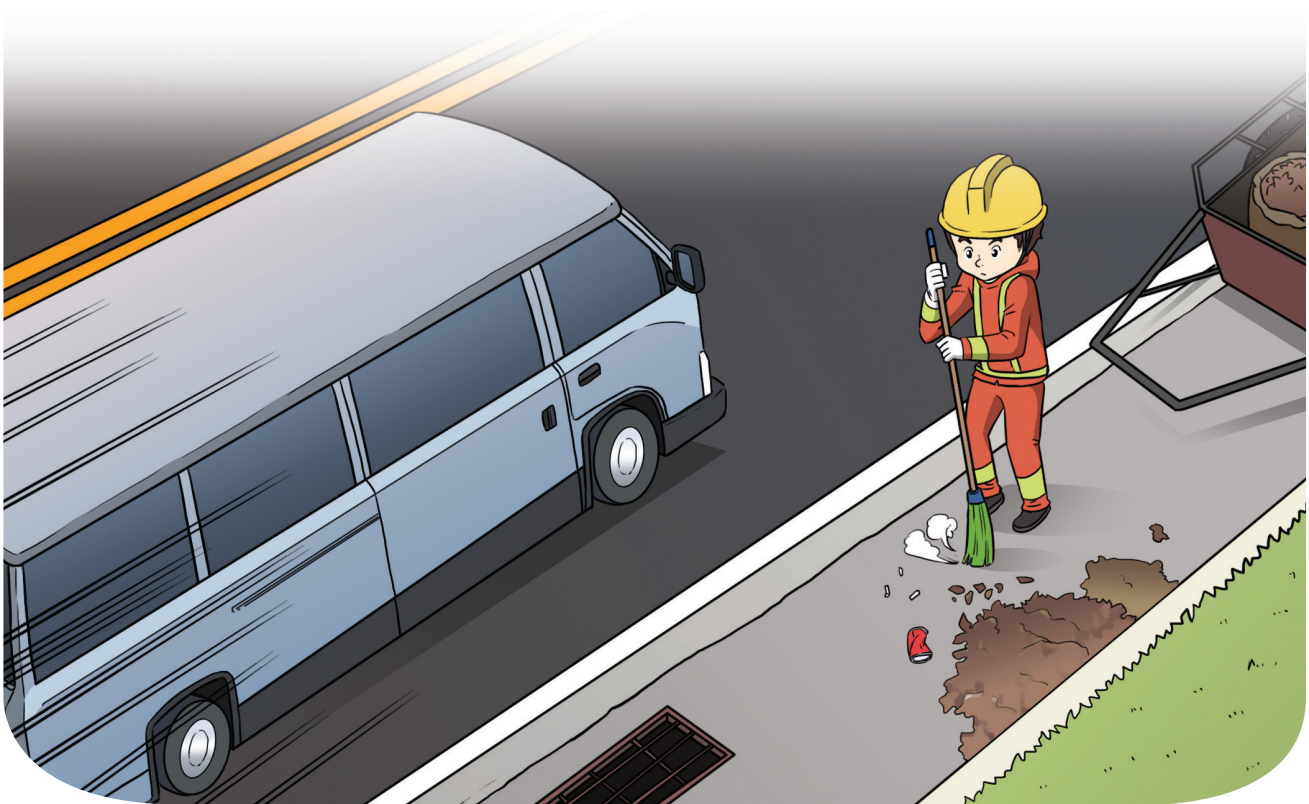
가로 청소작업

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

가로 청소작업이란?

도로변 또는 길거리에서 빗자루 또는 집계를 사용해 쓰레기(폐기물)를 주워 손수레 또는 쓰레받기, 대봉투 등에 담은 작업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에 의해 이루어진다.



● 환경미화 구분 ●

- 가로 청소 : 도로변 및 길거리에서의 쓰레기 청소, 진공청소차 사용 작업
- 폐기물처리
 - 생활폐기물, 음식폐기물, 재활용 폐기물, 특정폐기물(건설, 의료, 폐유 등)
 - 매립 또는 소각, 비료생산, 폐품 처리에 따른 원료 재생산
- 건물관리 : 현관 · 복도 · 계단 · 화장실 등 청소, 외벽 청소, 조경수 관리
- 공원관리 : 공원 낙엽 · 쓰레기 등 청소, 공원 화장실 청소
- 폐품 재생 : 페플라스틱, 페 캔, 폐고무 등의 선별 및 분쇄(파쇄) 작업
- 기타 하수 · 폐수 · 분뇨 처리, 도로변 화단가꾸기, 하천변 쓰레기 수집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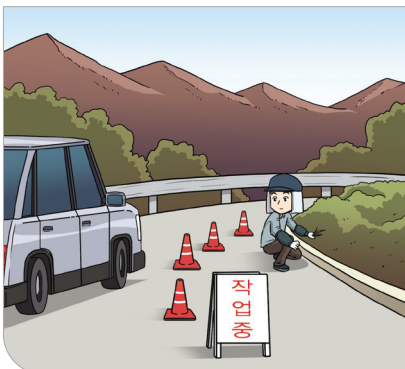


주요 위험요인

- ✔ 도로변에서 청소작업 시 주행 차량에 치임
- ✔ 도로 무단횡단 시 차량에 치임
- ✔ 작업 또는 이동시 넘어짐
- ✔ 과도한 먼지 흡입에 따른 호흡기 질환 발생
- ✔ 다량의 폐기물을 인력 취급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발생

안전대책

- 주행차량과 마주보며 청소작업을 진행해 나가고, 전방에 손수레를 위치
- 빛 반사 띠가 둘러지고, 눈에 띄기 쉬운 색상의 조끼 또는 작업복을 착용
- 도로교통을 준수하여 작업
-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
 - 미끄럼방지 기능의 안전화 올바르게 착용
 - 방진마스크 착용(일반 면 마스크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함)
- 중량물은 동력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취급하거나 동료와 함께 취급
 - 작업 전, 작업 중, 작업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시
- 강렬한 햇볕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음료 섭취 및 휴식 갖기
 - 창이 넓고 가벼운 원형의 모자 착용
 -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 등을 섭취



차량을 마주 보며 청소



보호구 착용 (반사 조끼 등)



음료 섭취 및 휴식 갖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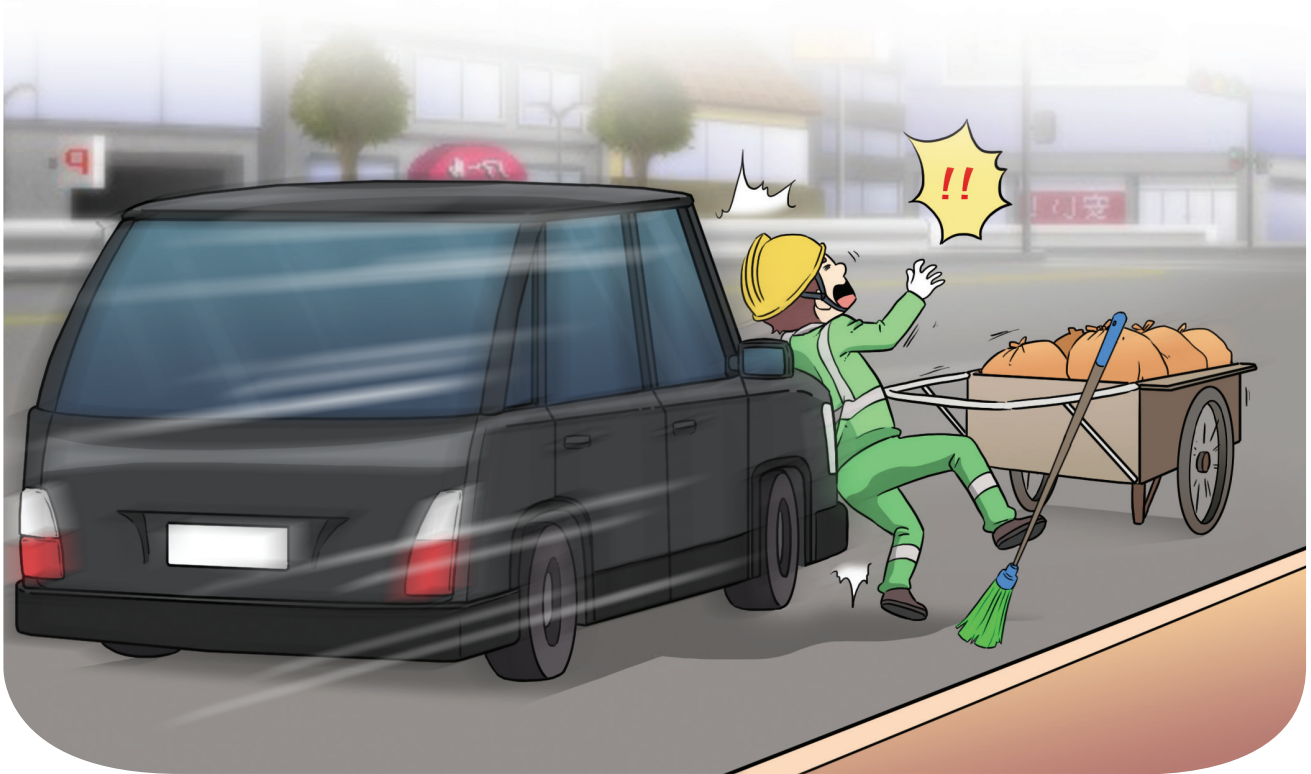




재해사례 : 가로청소 중 주행하는 차량에 치임

개요

새벽에 손수레를 끌고 청소작업을 하던 50대 환경미화원(경력 20년)이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후 응급 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



발생원인

- 차량 운전자의 전방 집중 미흡
- 새벽 도로변 작업 시 돌발상황 대처 미흡

예방대책

- 도로변 작업 시 최대한 인도(人道)에서 청소작업 실시
- 작업복은 밝은 색이면서 빛 반사 띠 부착
- 손수레의 테두리에 빛 반사 테이프 또는 위치표시 램프 설치
- 주행차량과 마주보며 청소작업을 진행해 나가고, 전방에 손수레를 위치





안전수칙

작업 전

- 새벽작업을 위해 전날 숙면과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.
- 작업에 필요한 복장을 갖춰 입는다.
 - 작업복의 테두리에 부착된 빛 반사 테이프 상태 확인
 - 미끄럼방지 기능의 신발, 방진마스크 착용 등
- 손수레 테두리에 빛 반사 테이프 부착 또는 위치표시 램프를 설치한다.
- 손수레 및 빗자루 등 작업도구의 상태를 확인한다.
- 어두운 곳 작업을 위해 휴대용 조명을 지참한다.
- 여름철에는 충분한 음료와 식염을 지참하고,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료 준비와 복장을 한다.
-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 준다.

작업 중

- 바닥의 돌부리 및 패인 곳 등을 확인하며 보폭을 작게 이동한다.
- 주행차량과 마주보며 청소작업을 진행해 나가고, 전방에 손수레를 위치시킨다.
- 도로변 작업 시 가능한 인도에 붙어 청소한다.
- 여러 작업자가 함께 작업 시에는 전방에 차량 유도자를 배치한다.
- 무거운 폐기물은 동료와 둘이서 함께 든다.
- 여름철 채양이 넓은 시원한 모자를 착용한다.
- 무리한 작업을 금하고, 작업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.

작업 후

- 작업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, 정리정돈을 한다.
-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당일의 작업을 마무리 한다.
-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, 샤워를 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 - 제34조 (전용 보호구 등)
 - 제79조의2 (세척시설 등)
 - 제33조 (보호구의 관리)
 - 제79조 (휴게시설)
 - 제82조 (구급용구)

